###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1376 발 의 년 월 일:2023년 10월 16일 발 의 자:이병도, 박강산, 박상혁, 박유진, 서상열, 서준오,

성흠제, 이병윤, 이용균, 임만균, 정준호, 최기찬, 허 훈, 황철규 의원(14 명)

### 1. 제안이유

○ 약자동행 정책의 취지와 사업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목적을 개정 하여 개별적인 상황에 부합하는 다차원적인 약자개념으로 조례의 지 향점을 부명히 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약자동행 정책의 추진 방향으로 사회이동성 제고와 불평등 완화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을 규정함(안 제1조).

### 3. 참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#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소득계층 이동 가능성을 제고하고"를 "사회이동성을 제고하고 불평등 완화를 통해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약자동행 정	제1조(목적)
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	
함으로써,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	
와 적극적 배려를 제공하여 약자	
의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을 제고	사회이동성을 제고하고 불평등
하고 사회통합 실현에 이바지함	완화를 통해
을 목적으로 한다.	

문서번호

2023101600000066

## 비대상사유서

요청인: 이병도의원

담 당: 오희선 과장

이정수 팀장

김지혜 주무관

접 수 일: 2023.10.16.

회 신 일: 2023.10.18.

내용문의: 02-2180-7953

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

목 차

- 1. 판단 근거
- 2. 작성자



#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 1조(목적) 중 "소득계층 이동 가능성을 제고하고"를 "사회이동성을 제고하 고 불평등 완화를 통해"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김지혜

**2** 02-2180-7953

e-mail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